

##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 시
신고인	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
변경사항	운영형태(광역형 또는 도시형)		
	변경연월일		
	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변경 사유			

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  
특별시장·광역시장·  
특별자치시장·  
특별자치도지사·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1. 신규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. 정류소·차고지 또는 부대시설의 명칭·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(명칭·위치 또는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3.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12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### 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수리	→	통보
신고인		처리기관 (담당 부서)		처리기관 (담당 부서)		처리기관 (담당 부서)		